(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6-68호

50+복합지원센터 센터장 공고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수탁기관인 50+복합지원센터 센터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 11. 19.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블라인드 채용 유의사항 안내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응시원서 내 출신학교, 출신지역, 연령, 성별, 가족관계를 기입하는 칸이 없으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연령 등)**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평가에 필요한 경력사항에 대한 기업명 또는 공공기관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서 별도의 표기 없이 '기관'이라 함은 '50+복합지원센터'를 의미합니다.

□ 채용개요

채용분야	직급	인원	주 요 업 무	계약기간
센터장	기간제	1명	50+복합지원센터 업무 총괄 등	임용일부터 2년

□ 근무조건

구분	내용	비고
근 무 지	• 50+복합지원센터(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 25-1)	
보 수	•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준용 - 세부사항은 기관 내부 규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확정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 법정휴게시간(1시간, 12:00~13:00) 포함	

※ 수습기간(임용일로부터 3개월) 중 근무성적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공통사항	• 응시연령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정년) 미만** • 남성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성별·학력·거주지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27. 1. 4.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임용결격사유【붙임 1】에 제한되지 아니한 자
자격사항	•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 등 법인체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9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관련분야 : 취·창업 지원, 사회복지, 평생교육, 직업교육, 중장년 지원**

※ 응시원서 마감일(2026. 12. 4.) 기준 충족되어야 인정

□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6. 11. 19. (목) ~ 12. 4. (금)	
원서접수		'26. 11. 19. (목) ~ 12. 4. (금) 14시까지	이메일 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12. 9. (수)	
2차	면접전형	'26. 12. 16. (수)	추후 통보
면접전형 결과발표		'26. 12. 22. (화)	
임용예정일		'27. 1. 4. (월) 예정	

※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전형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각 전형단계별 합격 발표는 홈페이지 공고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 채용방법

원서접수 → 서류전형 (적격심사) → 면접전형 → 결격사유 확인 → 임용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 각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단계(대상자) : 서류전형(응시원서 접수 완료자),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 결격사유 확인(최종합격자)

□ 원서접수

구분	내용
접수방법	• 접수방법 : E-mail(insa@busan.pass.or.kr) 접수 • 접수양식 : 【붙임 2】입사지원서 ~【붙임 3】동의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제출서류	**★ 제출 시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① 입사지원서(소정양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소정양식) ③ 교육 관련 증빙서류 사본 일체(해당자에 한함) ④ 경력증명서 사본 일체(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년-월-일), 담당업무, 직위(직급)·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⑤ 자격사항 증빙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⑥ 가점사항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③ ~ ⑥ 증빙서류 상 성명을 제외한 사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고유식별정보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최종 합격 시 원본 제출)** **※ 모든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6개월 초과분은 미제출로 간주, 진위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유의사항	• 접수방법(E-mail 제출)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마감 기한 내 응시원서가 수신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로 인정함 • 다른 접수방식을 통한 접수는 인정되지 않으며,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 가능 (같은 도메인으로 여러 회 제출한 경우 마지막 제출된 응시원서만 인정) •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증빙서류를 통해 진위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재 상 착오·미기재, 증빙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 • 가점사항, 자격사항 등 응시원서에 작성된 내용은 응시원서 마감일(2026. 12. 4.)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취득 완료, 만료 전 등)만 인정

□ 서류전형

합격배수	내용
- (서류전형 적격자)	• 전형대상 : 응시원서 접수 완료자 • 심사방법 : 적격심사 - 응시자격 적격여부, 블라인드 채용 위배 여부, 자기소개서 작성 성실성 위반 여부 • 불합격 기준 - 적격심사 결과 1개 항목 이상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 증빙서류 미제출로 자격사항 등 진위확인이 불가한 경우 -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제출한 증빙서류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면접전형

<table>
<tr><th>합격배수</th><th>내용</th></tr>
<tr><td>1배수</td><td>• 전형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응시자는 면접 당일 기관이 지정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응시 가능
• 면접방법 : 구술면접(경험·상황·인성면접)
• 평가방법 : 각 심사위원이 평가요소별 항목에 대하여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중 1가지로 평가
• 평가요소별 배점
<table>
<tr><th>평가
요소</th><th>공직자로서의
자세</th><th>전문지식과
응용능력</th><th>의사소통능력
및 직무이해도</th><th>태도 및
성실성</th><th>문제해결능력
및 발전가능성</th><th>총점</th></tr>
<tr><td>배점</td><td>20</td><td>20</td><td>20</td><td>20</td><td>20</td><td>100</td></tr>
</table>
※ 배점별 점수구분 : 상(20~17점), 중(16~11점), 하(10점 이하)
•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1개 이상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 가산특전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산술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 동점자 합격처리기준(예비합격자 선정 기준 동일)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td></tr>
</table>

□ 가산특전

구분	내용
항목별 적용비율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5% 부여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또는 10% 부여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면접전형 점수에만 부여함(서류전형의 경우 점수 환산 불가) •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 가산특전 ②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로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는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전형단계별로 가점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음

□ 임용

임용예정일	2027. 1. 4. (월) 예정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①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준용한 신체검사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가능) ⑤ 원서접수 시 제출한 증빙서류 원본 일체

□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선발인원	최종합격자(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운영방법	•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순위 부여 • 임용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번 순으로 임용 기회 부여(개별통보)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임용사유	• 최종합격자의 등록포기, 임용포기, 중도퇴사, 합격취소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유효기간	•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교육, 자격, 경력 등)은 증빙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채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접수마감일까지 최종합격하여 면허번호(또는 자격번호)가 부여된 면허(자격증)만 인정하며,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합니다.

○ 입사지원서를 대리 및 허위 작성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연락 또는 기관 홈페이지(https://busan.pass.or.kr)에 공고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단, 반환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경영관리실(☎051-861-97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임용 결격사유

< 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